금융규제혁신연구회제1회세미나

#### 스테이블코인 및 분산원장기술 기반 금융혁신 동향 및 향후 과제

2025.6.26.

김필수\*

\*금융결제원차장,고려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본자료에 포함된 의견 및 주장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로 금융결제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자료의 공유나 재배포는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표자 소개

#### 김필수(금융결제원 차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석사/박사(재학중)

금융결제원전자금융부,스마트금융실,미래금융실,경영기획부,디지털금융단근무(2012~현재) 금융위원회전자금융분야신속제도개선T/F실무위원(2018)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및 AML분야글로벌동향연구모임멤버(2023) 한국은행CBDC활용성테스트가상환경기술실험(토큰화된자산의고객대상발행) Project Leader(2024) BIS Innovation Hub Project Hertha Observer(2024-2025) 은행법학회회원(2024~)

전자지급서비스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고려법학제104호 (2022년 3월) 착오송금 관련 판례법리의 문제점과 송금의뢰인 보호 방안,고려법학제112호 (2024년 3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정의,규제경계,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일감법학제57호 (2024년 4월)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 (2023년 6월) - "디지털화폐의 법적 쟁점 -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동향 및 시사점"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은행 공동 주최 2023 사법학자대회 특별주제 발표 (2023년 10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법적 검토" 한국금융연구원 원내세미나 발표(2024년 4월) - "화폐와 지급결제의 역사적 변곡점"

#### CONTENTS

- 1. Why Stablecoin?
- 2. 화폐와 자산의 토큰화 관련 글로벌 정책·제도 동향
- 3. 우리나라의 현 주소
- 4. 향후 전망 및 과제

1. Why Stablecoin?

####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및 유형

EU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 일본 "전자결제수단", 영국 "적격스테이블코인(qualifying stablecoin)", 미국 "지급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 주요국 입법에서 다양한용어로 지칭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또는 암호자산)"을 핵심 개념 요소로 판단하고 있음

스테이블코인의가치안정메커니즘(안정적인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은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핵심 요소 가치안정메커니즘은 스테이블코인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함 크게지산에 연계하는 방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식, 양자를 혼합한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가치안정 메커니즘

담보형 알고리즘형

법정화폐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상품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혼합형 (담보+알고리즘)

Stablecoin Regulation

보유자 상환청구권의 법적 보장

고유동성 준비자산 100% 이상

준비자산의 분별관리 및 도산격리

##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은 구별할 필요

####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보유자 상환청구권의 법적 보장

고유동성 준비자산 100% 이상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

Unbacked Crypto-assets

BTC, ETH, DOGE, TRUMP

높은 가격 변동성

자산 담보 등이 없음

지급수단 활용 어려움(투자자산)

#### 스테이블코인과 전자화폐의 차이점

#### 스테이블코인과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이동하는 방식이 다름

전자화폐 - 발행자의 시스템 기록을 통해 금전적 가치의 이동이 이루어지며 모든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계약관계가 존재

스테이블코인 - 발행자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분산원장 상에서 보유자 간에 직접 금전적 가치를 이동할 수 있음

수탁형 지갑서비스 제공자 등 별도의 중개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발행자 개입 없이 거래 처리

####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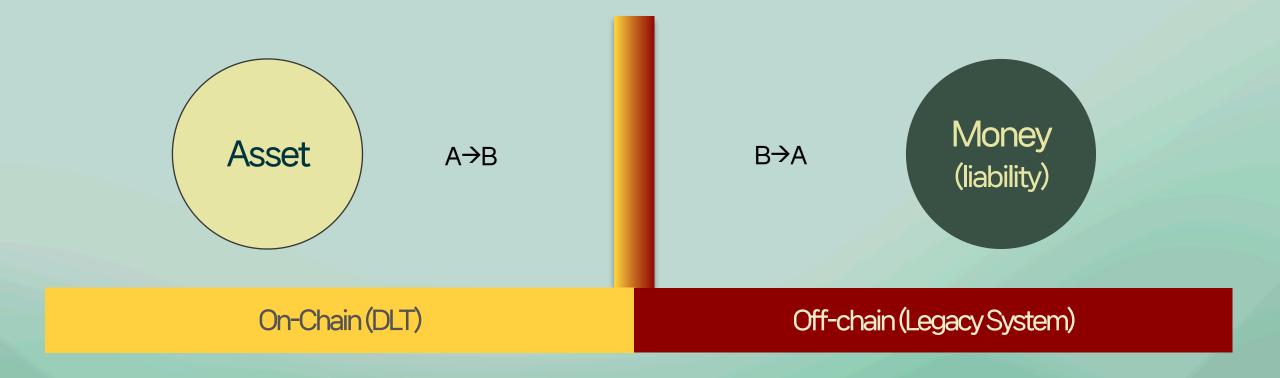
2025.5.25. 기준 시가총액약 2,460억달러(약 336조원) - 미달러 M2(21조 7,625억달러, 2025.3월 기준)의 1% 상회

스테이블코인 전체에서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약99%

테더와 써클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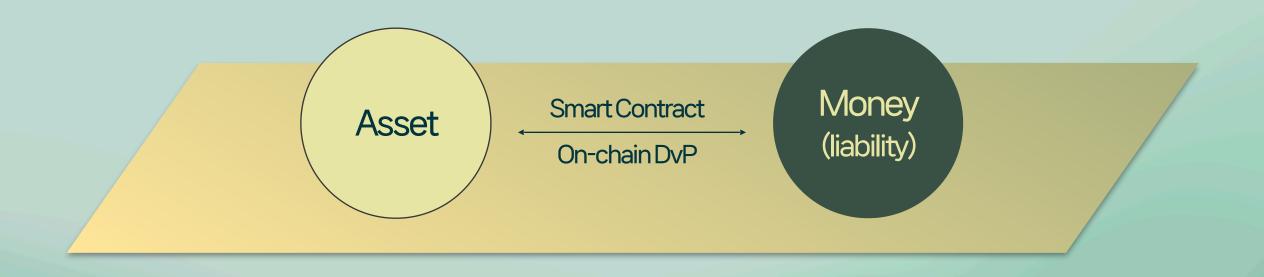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외에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

###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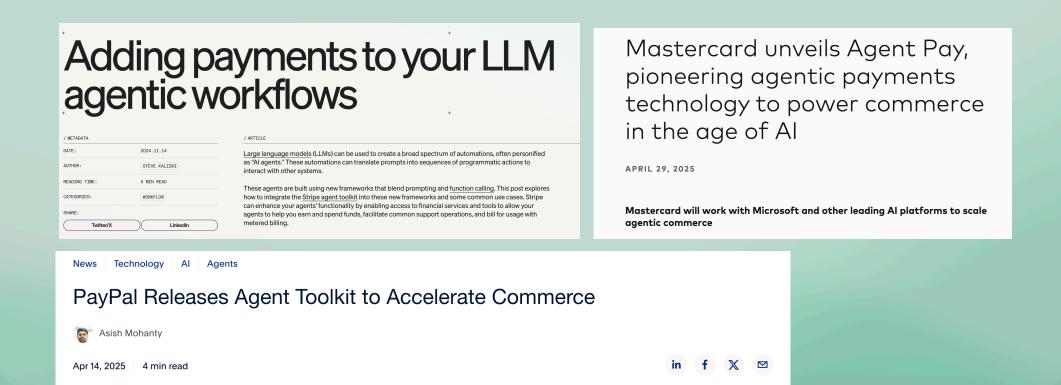
토큰화된 자산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토큰화된 화폐가 필요

###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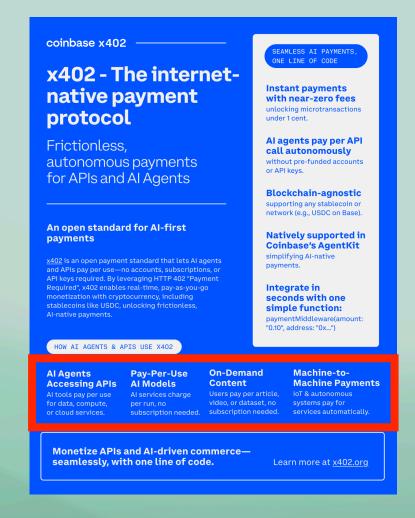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화폐는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Al Agent X Commerce X Payments (Stripe, Mastercard, Paypal 등)



#### Coinbase x402





### 역사적으로도 "필요한 화폐의 부족"은 "새로운 화폐의 탄생"으로 이어짐

"One lesson is that shortages of money are a powerful force in stimulating new forms of money to emerge. In the 1690s the extreme shortage of silver created a compelling reason for merchants to adopt new paper currency."

"1690년대 심각한은(silver) 부족 현상으로 인해 상인들이 새로운 종이 화폐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기존 화폐가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기존의 화폐는 중앙화된 원장이 아닌 분산원장을 통해 거래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건부 거래를 수행하는 데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Al Agent Economy에 적합한 교환 수단의 부재도 문제될 수 있음. 특정 디지털 환경에서 기존 화폐의 '사실상의(effective)' 부족 현상을 초래. Why Stablecoin? Why Digital Money?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는 정말 필요할까?

"묶여있던 자금을 자유롭게" 하는 지급서비스, 조건부 지급서비스, 담보 활용, Al Agent 등

분산원장 기반 금융자산/실물자산 토큰화와 연계하여 디지털화폐의 수요 증가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로 검토해볼만한 사항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이 광고 수익을 이용자에게 분배하거나 컨텐츠 이용료를 이용량에 비례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 전통적인 지급결제 방식보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예시) 플랫폼 이용자의 계정과 연계된 지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자동으로 지급 또는 출금하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며, 소액 거래(micropayment)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서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보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효율적일 가능성 존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가맹점 정산대금 처분제한, 검증된 정산내역 확인시 가맹점 정산 대금 즉시 지급 등의 기능을 구현하여 전자상거래 가맹점 정산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안심 신속 가맹점 정산]

(예시) 신속한 가맹점 정산을 통해 장기간의 정산주기로 인한 플랫폼 입점업체 불편과 운전자금 조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 정책과 연계하는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활용사례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볼만 할 것으로 생각됨

글로벌 기업의 재무 관리, 공급망 결제 등의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활용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 B2B 활용 사례의 중요성

(예시) 스테이블코인의 프로그래밍 기능과 실시간 자금 이전을 활용하여 미리 설정한 마감시간에 초과자금을 지정 계좌로 전액 이전(zero balance), 결제실패 방지를 위해 잔액 부족시 다른 계정으로부터 자금이전 및 결제 처리(dynamic funding) 등

인공지능 에이전트(Al Agent) 간의 경제활동이 부상하면 전통적인 지급수단이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지급수단으로 활용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해외에서 Al Agent와 Stablecoin의 연계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 2. 화폐와 자산의 토큰화 관련 글로벌 정책·제도 동향

####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동향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 Regulation) 입법 완료(2024.06.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시행, 2024.12.부터 전면 시행) 일부 위임규정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고, 회원국별로 자국 입법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



2023년 금융서비스시장법(2023 FSMA) 입법 완료.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협의 발표(2023.11.)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령 2025 개정안 발표(2025.4.),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Consultation Paper 발표(2025.5.)



자금결제법, 은행법 등 개정 완료(2022.06. 입법완료, 2023.06.부터 시행 중), 2025년 자금결제법 추가 개정 추진 중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2025.05.), 하위규정 입법 등 본격 시행 준비 중(2025.08.부터 시행 예정)



트럼프 2기 정부 출범(2025.1) 이후 제119대 의회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 빠르게 진행 중 제119대 의회 GENIUS Act of 2025(2025.6.17. 상원 통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U 자본시장 통합 관련 공개 협의 질문 중 하나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 토큰화된 상업은행 화폐(예금), 전자화폐토큰(스테이블코인)이 "결제자산"으로서의 현금(cash) 정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Does the definition of cash need to be refined to take into accou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ffecting the provision of cash,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tokenised central bank money, tokenised commercial bank money and electronic money tokens? If 'yes', please specify how the use of such settlement assets can be facilitated while maintaining a high level of safety for cash settlement in DLT market infrastructures?"

# Stablecoin을 활용한 Settlement, 스테이블코인/토큰화MMF의 담보 활용 검토

#### RECOMMENDATIONS TO EXPAND USE OF NON-CASH COLLATERAL THROUGH USE OF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REPORT TO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S GLOB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BY THE DIGITAL ASSET MARKETS SUBCOMMITTEE

**November 21, 2024** 



#### TARGETED CONSULTATION ON INTEGRATION OF EU CAPITAL MARKETS

	Yes	No
73) Are there any legal barriers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issue, segregation and custody requirements also in the context of DLT-based issuance and settlement?		
74) Does the definition of cash need to be refined to take into accou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ffecting the provision of cash,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tokenised central bank money, tokenised commercial bank money and electronic money tokens? If 'yes', please specify how the use of such settlement assets can be facilitated while maintaining a high level of safety for cash settlement in DLT market infrastructures?		

#### 금융시장인프라의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 금융시장인프라 샌드박스 제도

#### **EUDLT Pilot Regime**

UK FMI Sandbox - Digital Securities Sandbox(DSS)

HongKong, Project Ensemble(wCBDC Sandbox)/Stablecoin Issuer Sandbox

실험단계를 넘어 제한적으로 실 서비스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임시)을 제공하고 규제 당국이 신기술의 잠재적 혜택과 위험을 이해하여 영구적인 규제 체계 마련을 준비

# EU, 분산원장기술 시범 운영 체제(DLT Pilot Regime)

증권의 발행, 거래, 결제 등에 있어 분산원장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EU 금융규제 일부 요건 면제, 관련 시범사업 허용 목적

일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2023.3.23.부터 시행 중

금융상품을 토큰화할 때 전통 금융 규제 체계와 맞지 않거나 충돌되는 부분, DLT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위험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자본시장인프라 운영, 분산원장기반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유통 관련 시범사업 추진해볼 수 있도록 허용

이에 따라 승인된 분산원장 금융시장인프라는 아직 제한적(360X, CSD Prague, 21x) 토큰화된 예금, 전자화폐토큰 등 결제자산의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ESMA)

## 영란은행 및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평가하는 디지털증권의 잠재력

거래 후 프로세스(post-trade process) 개선 - 거래와 거래 후 프로세스의 통합

결제 기간 단축 및 신용 리스크 축소

중개자 수 감소 및 프로세스 간소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 도입,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 생태계 구축

금융시장인프라 샌드박스 일환으로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igital Securities Sandbox) 도입 증권 거래 및 결제의 효율성 제고, 새로운 기술 활용에 따른 위험 관리

# 영국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도모: DLT 기반 예탁 결제 기능 +거래 플랫폼 통합 수행 허용

금융안정: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활동 또는 대규모 거래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테스트 기회 제공 + 금융안정 위험 완화 방안 모색

시장 무결성 및 투명성 보호: DLT 도입이 가능하도록 시장 무결성 및 투명성을 뒷받침 하는 제도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는 방안 모색

#### 영국 디지털 국채 시범 발행 추진 -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와 연계

#### **⇔** GOV.UK

Home > Government

Policy paper

#### Announcement of Preliminary Market Engagement Exercise for the Digital Gilt Instrument (DIGIT) Pilot

HM Treasury and the DMO are seeking views from industry to inform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the pilot DIGIT issuance.

From: <u>HM Treasury</u>, <u>UK Debt Management Office</u> and <u>The Rt Hon Rachel Reeves MP</u>
Published 18 March 2025

#### The DIGIT Pilot

DIGIT will support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maintain the UK as a world-leading and global financial centre. As other financial hubs explore DLT, the potential for significant growth in this area is clear. By launching now, the Government is positioning the UK financial services sector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he pilot is seeking to:

- Enable the Government to explore how DLT can be applied to UK sovereign debt issuance processes.
- Catalyse the development of UK based DLT infrastructure and the adoption of DLT across UK financial markets.

The pilot's initial design features have been set in order to meet these aims and include DIGIT being digitally native, short-dated, issued on a platform operating within the <u>Digital Securities Sandbox (DSS)</u>, and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s main debt management programme.

#### **Next Steps**

HMT and the DMO are seeking responses to the questions in the Preliminary Market Engagement Notice by 11.59pm on 13 April 2025.

3. 우리나라의 현 주소

#### 우리나라의 현 주소

국내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의 한계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을 중심으로 논의 (주요국은 채권/펀드/주식 중심)

"금융회사의 분산원장기술 활용"과 "가상자산"을 구별하지 못함 ("금가분리" 기조는 금융회사의 분산원장기술 활용마저 제약)

민간디지털화폐발행 및 유통(활용)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요국에 비해 늦은편

<u>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벗어나 지급결제 및 금융시장인프라 개선에 활용되는 스테이블</u>코인의 잠재력에 관한 논의와 연구의 부족

글로벌 주요국의 금융분야 분산원장기술 활용 혁신 시도와 주도권 경쟁 본격화 속에 우리나라는 제도/시장/기술 전반의 전략 부재

# 정책/제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우리나라 이용자의 해외 서비스 의존도 증가 가능성

해외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MMF 등이 지속 등장 -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 증가

공급망 금융, 글로벌 기업의 재무관리 개선 등에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성 제약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금융회사의 분산원장기술 채택 지연 및 활용 역량 약화 - 금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국내 분산원장기술생태계 위축 - 경쟁력 있는 국내 기술 기업의 성장 제약 및 해외 이탈 가속화

### "원화" 스테이블코인 - 어디에 쓸 것인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 가상자산거래(현물)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이 해외에 비해 높지 않은 시장 환경

국내지급결제의 경우 기존지급수단이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제공 중 - 소매결제 부문의 수요는 제한적일 가능성

새로운 지급결제 수요 - Al Agent, Micropayment 등 기존 지급수단 보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의 발굴 필요

B2B, Cross-border 개선 잠재력 높음 -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의 글로벌 확장

금융투자상품(채권, 주식, 펀드) 토큰화와 연계한 대금결제 수단(DvP) - 금융회사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4. 향후 과제

"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 규율체계 마련 + 외국통화 스테이블코인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 정비 등의 시급성 고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조속한 추진 필요

발행의 경우 발행, 상환, 준비자산 관리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 마련이 중요 (상환청구권의 법적 보장 + 준비자산 관리 규제)

발행자도산등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방안의 설계도 중요한 과제

법정요건 갖춘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주요국 입법례도 동일)하되 "발행" 진입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은행 규제 유사성,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은행권 발행자의 역할이 중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활용 사례 점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 이후에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가능할 것 전금법은 규제특례 부여 가능하므로 지급결제 활용 사례 샌드박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를 점검하고 지급법제 개선 방향 검토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관련해서는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마련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에 활용에 따른 혁신과 위험의 실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규제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내지급결제 환경에 부합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지급수단의 차별성,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성숙할 필요

지급법제의 완결성 있는 정비까지 완료된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을 허용하는 것은 혁신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문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활용사례를 점검한 이후 지급법제의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

외국환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병행될 필요 (대외지급수단, 외국환 모니터링, 원화 국제화 등)

IMF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 UN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등에 스테이블코인이이미 포함되었음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크로스보더 지급결제 효율화 국면에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달러 스테이블코인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여 통화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 유용성도 중요할 수 있음

디지털 금융시장 인프라 조성과 시범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 분산원장기술 기반 금융상품 발행/유통/결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등은 금융시장인프라 샌드박스의 기반이 되기에는 한계가 존재(기간, 대상법령 등)

자산 토큰화와 이와 관련한 새로운 관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금융규제법제와 거래법적 법률관계 규율체계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움

해외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 개정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권리의 토큰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 격차의 해소 필요

무허가형 분산원장기술(Permissionless DLT)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전한 활용 방안 연구 및 국내 기술력 확보 및 발전 전략 논의

#### "가상자산"과 "금융분야 분산원장기술 활용"의 명확한 구별

"금융회사"의 분산원장기술 활용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의 개선 (겸영업무 영위 허용, 투자 제한 완화 등)

단기국채등의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화 발행 및 유통 시범사업 추진 (금융회사의 담보 활용 실험 포함)

민간 금융회사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기반 글로벌 협력 및 해외 진출 확대 지원, 금융당국의 국경간 협력 논의 확대

1	향후	וה	H
4.	<b>ラ</b> チ	上	M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분산원장기술 기반 금융상품의 토큰화는 금융시장 인프라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서비스를 위한 상온 초전도체" (Stripe CEO)

# 토큰화된 화폐,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자본시장

#### MEMORANDUM

**To**: Crypto Task Force Meeting Log

From: Crypto Task Force Staff

**Re**: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JPMorgan Chase & Co.

On June 17, 2025, Crypto Task Force Staff met with representatives from JPMorgan Chase & Co.

The topic discussed was approaches to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regulation of crypto assets. JPMorgan Chase & Co. representatives provided the attached document, which was discussed during the meeting.

우리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 **Agenda**

- Overview of existing business footprint, including Repo on existing JPMC platforms of Digital Financing and Digital Debt Services. Additional discussion on the potential competitive angle as markets evolve.
- Area of analysis reviewing the potential impact of existing capital markets activity migrating to public blockchain. Specifically what areas of the existing model might change, and how firms could assess the risk and benefits of those changes.
- Future engagement with the Task Force.

#### **Participants**

- Scott Lucas, Managing Director, Head of Markets Digital Assets
- Justin Cohen, Managing Director, Global Head of EDG & SI Product Development.
- Aaron Iovine, Executive Director, Global Head of Digital Assets Regulatory Policy

# 토큰화된 화폐,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자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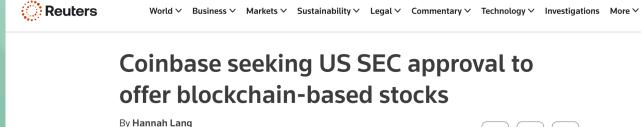
# Robinhood Developing Blockchain-Based Program To Trade U.S. Securities in Europe: Bloomberg

The brokerage firm is reportedly considering Arbitrum, Ethereum and Solana for the new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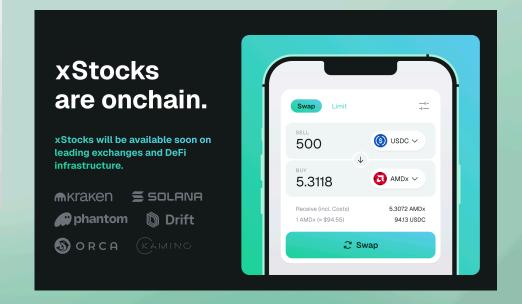
Aa

BY HELENE BRAUN | EDITED BY STEPHEN ALPHER

Updated May 8, 2025, 10:10 p.m. Published May 8, 2025, 4:49 a.m.



June 18, 2025 3:28 AM GMT+9  $\cdot$  Updated June 18, 2025



"We are going to keep the U.S. the dominant reserve currency, and we will use stablecoins to do it."
- Scott Bessent(79th United States Secretary of the Treasury)

56K Modem 기반으로는 Netflix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 척화비"를 걷어내고 우리나라 금융권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Thank You

pskim@kftc.or.kr